

1. 개정이유

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합조사의 단계별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및 보고를 하도록 하여 조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합조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및 보고하도록 함(제7조의4부터 제7조의9까지)
- 나. 제작결합조사의 본조사 기간을 설정하고, 추가조사 등 본조사 기간 연장 필요시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치 및 보고하도록 함(제7조의8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2. 7. 15. ~ 8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제3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제9조의3에 따른 결함기술분석 전문위원회(이하 “기술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의5제2항 후단 중 “확인하여”를 “확인하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”로 한다.

제7조의6제1항 단서 중 “다만,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경우와”를 “다만,”으로, “15일 이내에”를 “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”로 한다.

제7조의7제4항 본문 중 “15일”을 “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연장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”를 “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,”로,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의8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”를 “기술위원회의 심

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성능시험대행자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본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본조사의 진행상황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7조의9제3항 단서 중 “15일”을 “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”를 “기술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의3제1항 중 “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(이하 “기술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”로, “있고, 매월 14일 이내에 기술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”을 “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7조의4(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) ①·② (생략)	제7조의4(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	
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험방법, 절차 등에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9조의3 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(이하 “기술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---			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			
제7조의5(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) ① (생략)	제7조의5(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제40조의2제4항 또는 규칙 제40조의10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 중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		

획을 수립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7조의6(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보고)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매 월 20일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경우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7조의7(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) ① ~ ③ (생략)
④ 성능시험대행자는 120일 이내 기간 동안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 자료 검토 등이 필요하여 예비

-----.

----- 확인하고 기술위원회
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
에 그 결과를 -----.

제7조의6(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보고) ① -----

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
5일 이내에 그 결과를 -----
-----.

제7조의7(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-----

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
5일 -----.

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예비조사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7조의8(제작결함 본조사 방법)

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제작결함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작결함 확인을 위해 시험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성능시험대행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조사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-----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---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--
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8(제작결함 본조사 방법)

① -----

-----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
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성능시험대행자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 조사가 필요

하여 본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
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
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
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,
본조사의 진행상황을 매월 20일
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
해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9(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
성 조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_____

_____ . _____

_____ 기

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

일 _____.

제9조의2(제작결합정보의 관리 및 분석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
기술위원회

④ (생략)

제7조의9(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
성 조사) ①·② (생략)

③ 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의2(제작결합정보의 관리 및 분석) ① (생략)

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고, 분석한 결과가 제작결함의 의심되는 경우에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

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분석을 종료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심의안건으로 재상정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9조의3(결합기술분석위원회 운영 등)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, 제작결합조사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결합이 의심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결합기술분석전문위원회(이하 “기술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매월 14일 이내에 기술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.

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, 제작결합 의심사항에 대하여 제작결합조사 지시를 건의할 수 있다.

----.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3(결합기술분석위원회 운영 등) ① -----

----- 결합기술분석전문위원회-----
-----있다.

② ----- 기술위원회
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-----

-----.